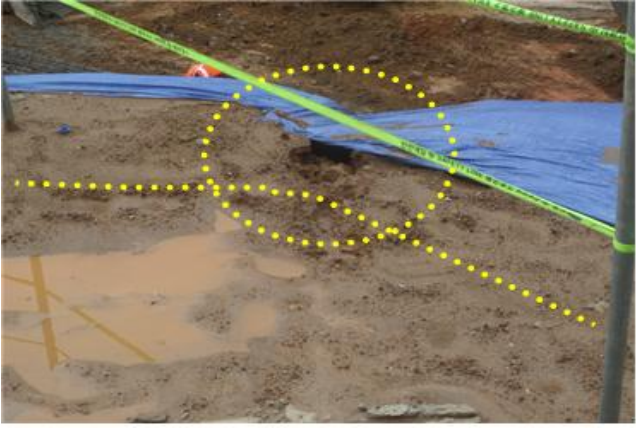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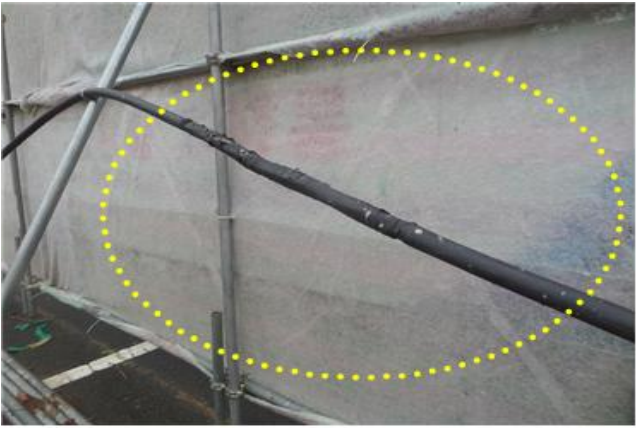
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5.18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상종

<p>○ 사면 안전(건축부)</p> <p>- 굴착사면 경사부는 수방을 대비하여 보호덮개가 잘 덮혀 있으나 배면부에 보호덮개가 미흡하게 설치되어 세굴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작업에 간섭되지 않는 범위까지 배면 상단에 추가 덮개 보강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</p> <p>- 현장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설전기 수전선의 절연테이프가 일부 손상된 상태이므로 감전 사고 예방과 보호관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</p> <p>- 현장에 사용 준비중인 원형톱기계는 현장 사무실 인근에 배치되어 불꽃 발생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꽃 비산방지 조치요망</p> <p>※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제8항</p>	

○ 품질관리(건축부)

- CIP 두부가 훼손된 개수가 다수 있으며, 시방서에는 TREMIE PIPE를 사용하여 선단부터 콘크리트를 채우게 되어 있으나 철근 간섭 등으로 인해 호퍼를 사용하여 상부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어 주열 형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
- 향후 공사에서는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여 콘크리트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고 두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요망

- 또한 두부 손상이 콘크리트 기준 양생일 전에 발생한 경우 하부 주열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CAP BEAM 시공전에 손상이 큰 주열은 건전도 검사를 통해 굴착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55 콘크리트 타설

- (1)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"한국공업표준규격" 및 "콘크리트표준시방서"에 의한다.
- (2) 철근망 설치가 완료되면 TREMIE PIPE(φ150MM)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공저로부터 타설 한다.
- (3) 타설은 한공이 완료 될 때까지 계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이때 TREMIE PIPE의 하단은 타설된 콘크리트속에 1.0M 정도 묻힌 상태에서 타설 되어야 한다.
- (4)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해야 한다.
- (5) H - PILE이 건립되는 CIP 공에서는 TREMIE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계 강도를 만족 시킬 수 있는 MORTAR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시행전에 반드시 배합기준 및 강도시험등의 결과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6) CIP 타설용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$o_{ck} = 210 \text{ MPa}$ 이고 표준 5 LUMP치 $S = 15 \text{ CM}$ 이어야 한다.
- (7)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.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침사지의 우수를 기존 우수관에 배출하고 있으므로 수방에 대비하여 토사가 기존 우수관에 유입되어 통수단면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41조(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CIP 작업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호퍼를 인양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혹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하기 바람.

- 작업중 버켓 이탈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탈방지 안전핀을 설치하고 작업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



○ 사면 안전(건축부)

- 작업장 내 사면은 우천으로 인하여 유실 및 붕괴가 되지 않도록 사면에 보호덮개를 설치하기 바람.

- 우천시 사면토사 유실 및 통행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(토석붕괴 위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보관중인 산소용기 게이지에 잔류압이 있으니 산소용기, 가스용기 등 고압용기 사용후 보관 시에는 잔류압 제거 및 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기 바람.

- 산소절단 작업을 위한 고압용기 사용 시에는 보관함에서 직접 인출하여 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운반 및 작업 시에는 전용대차를 이용하여 작업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설비부)

- 지열천공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산소절단기용 가스용기는 역화방지기가 미 부착되어 있으니 화재, 폭발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작업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설비부)

- 지열천공 작업장 강관 절단을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되어있지 않으니 방화수 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하기 바람.

- 산소절단기 호스는 인발 작업중인 굴삭기와 지열천공 사이에 있어 굴삭기 궤도에 의한 호스 파손이 우려되니 굴삭기 작업 반경 외로 인출하여 작업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(소화설비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설비부)

- 침사지 굴착 경사면에 적치되어 있는 지열천공 작업용 원형강관, 굴삭기 버킷은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)

